# PHOENIX OB
# 회 칙

2014년 03월 29일 개정

# - 목 차 -
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명 칭

제 2 조 목 적

제 3 조 회 원 자 격

제 4 조 회 원 의 무

제 5 조 자 격 상 실

제 2 장 임 원

제 6 조 임 원 구 성

제 7 조 임 원 임 무

제 8 조 임 원 선 출

제 9 조 임 원 임 기

제 3 장 수입 및 지출

제 10 조 수 입

제 11 조 지 출

제 12 조 결 산

제 13 조 장 부

제 14 조 보 관

제 4 장 경 조 비

제 15 조 지 급 내 역

제 5 장 회 의 체

제 16 조 총 회

제 17 조 임 원 회 의

# 제 1 장 총 칙

## 제 1 조 명 칭

본회의 명칭은 피닉스 OB회(이하 본회라 칭함)라 한다.

## 제 2 조 목 적

본회의 목적은 각 회원의 친목도모와 애경사시 상호협조,

재학생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3 조 회원자격

본회의 회원자격은 아래 각 항과 같다.

1) 한성대 피닉스에서 활동한 동아리에 애착이 있는 졸업생.

## 제 4 조 회원의무

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고, 기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,

참석할 의무를 가진다.

## 제 5 조 자격상실

본회의 자격상실은 아래 각 항과 같다.

1)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

※ 탈퇴 및 제명 회원에게 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.

## 제 2 장 임 원

### 제 6 조 임원구성

본회의 임원 구성은 아래 각 항과 같다.

1) 회장 : 1명

2) 총무 : 1명

3) 회계 : 1명

※ 필요에 따라 총무는 회계의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.

### 제 7 조 임원임무

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) 회장 : 본회를 대표하며, 회계, 사무 총괄 및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
2) 총무 : 회장을 보좌, 동아리 경조사 및 정기모임을 관리한다.

3) 회계 :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
### 제 8 조 임원선출

1) 임원선출은 정기총회에서 전체회원 과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한다.

2) 회장 결원 시 총무가 회장직을 대행하며, 부득이한경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 임시총회를 소집 선임 할 수 있다.

3) 총무 결원 시는 회계가 업무를 대행하며, 부득이한 경우 잔여임기 6개월 이상일 때 임시총회를 소집 선임 할 수 있다.

제 9 조 임원임기

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총회의 인준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.

# 제 3 장 수입 및 지출

## 제 10 조 수 입

1) 회비 : 본회의 수입은 회원 1명당 매월 1만원을 기준으로 각출하고 과부족 시에는

회장의 권한으로 추가 각출 및 유보 할 수 있다.

## 제 11 조 지 출

본회의 지출은 아래 각 항과 같다.

1) 경조금 지급

2) 재학생 지원
- 처녀비행 지원 100만원 이내
- 전년도 재학생 회장, 활공부장에게 공로상장과 격려금 지원(5만원/학기)
- 비행활동 중 골절 이상의 상해시 위로금 지원(10만원)

3) 기념품 제작

4) 정기모임 비용 보조

5) 기타

## 제 12 조 결 산

본회의 결산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하며

공고 내용은 아래 각 항과 같다.

1) 본회 수입 및 지출내역

2)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## 제 13 조 장 부

본회의 보유 장부 및 서류는 아래 각 항과 같다.

1) 금전출납부

2) 회칙

3) 결산공고

4)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제 14 조 보 관

제11조에 의거 작성된 장부 및 서류보관 기간은 작성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.

# 제 4 장　　경 조 비

## 제 15 조　　지급내역

본회의 경조비 지급기준은 아래 각 항과 같다.

1. 애경사시 경조비 지급금액

| 애 사 시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애사 내용 | 2년 미만 | 2년 ~ 5년 | 5년 이상 | 비고 |
| 부모 상 | 100,000 | 200,000 | 300,000 | 근조화환 |
| 배우자 상 | 100,000 | 200,000 | 좌 동 | 근조화환 |
| 본 인 상 | 500,000 | 좌동 | | 근조화환 |
| 경 사 시 | | | | |
| 경사 내용 | 2년 미만 | 2년 ~ 5년 | 5년 이상 | 비고 |
| 본인 결혼 | 100,000 | 200,000 | 300,000 | 축하화환 |
| 자녀 돌 | 100,000 | 좌동 | 좌동 | |

※ 배우자부모에 대한 내용은 친부모와 동일.

2. 지급기준

1) 회비 납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
2) 애경사의 지급대상 자격은 행사 및 호적상의 기재된 내용에 의한다.

3. 회칙 수정 시행

1) 경조비 지급 기준 마련(09년 03월 01일부터 시행)

※ 위의 회칙은 상조회의 재정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제 5 장　　회 의 체

### 제 16 조　　모　　임

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으로 구분 소집하되 아래 각 항과 같다.

1) 정기모임

- 일　　시 : 진활제와 겸함

- 장　　소 : 상동

- 주요안건 : 임원선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- 소 집 자 : 회장

- 공　　고 : 소집일 10일전 게시판 공고, SMS발송.

2) 임시모임

임시모임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
### 제 17 조　　임 원 회 의

제12조에 따른 회의소집 필요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할 수 있다.

-끝-